

	<h2 style="margin: 0;">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5-0-24
			제정일자	2015. 11. 13.
	개정일자			
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	1

제정 2015년 11월 13일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. 단,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기획예산팀장 및 경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기획처장,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 순으로 그 직을 임시로 대행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최초 임기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한다.

제4조(회의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참석 위원 중 3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.

제6조(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

②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리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8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